

<2026 대비 객관식 관세법개론 정오표>

쪽	문제	내용	수정 전	수정 후
202	17	보기	⑤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 를 하여야 한다.
281	02	보기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의하여 국 제무역선(기) 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
299	29	보기	② 정부비축용물품 등을 제외하고 보세창고에 장치된 내국물품 :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정부비축용물품 등을 제외하고 보세창고에 장치된 내국물품 :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02	36	보기	⑤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포장용품	⑤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
373	51	정답 및 해설	④ 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u>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u>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u>잠정적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u> 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u>더하여</u>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① 제품가격 × [외국물품가격 / (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이 해당된다.
373	52	정답 및 해설	① 제품가격 × [외국물품가격 / (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이 해당된다.	④ 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u>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u> ② 세관장은 <u>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u>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u>잠정적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u> 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u>더하여</u>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405	31	정답 및 해설	① 물품검사장소가 아닌 <u>물품검사방법</u> 이 해당된다.	① 물품검사장소가 아닌 <u>물품검사방법</u> 이 해당된다. (2026년 현재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과 업체는 삭제되었음)
420	31	정답 및 해설	① 한-터키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③ ① <u>생산자</u>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② <u>생산자</u> -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④ <u>수입자</u> -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⑤ <u>수출자</u>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423	53	정답 및 해설	③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 교환은 관세법에서 규정한다.	④ 원산지인증수출자와 물류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439	61	해설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0분의 10(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이 부과되며, 납부지연 가산세의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일 10만분의 22). 만약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100분의 3이 추가로 부과된다.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0분의 10(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이 부과되며, 납부지연 가산세의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일 10만분의 22). 만약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100분의 3이 추가로 부과된다.
464	36	해설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포장용품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해당 보세공장에서 <u>제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u> 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6 ~ 353	공통	용어 변경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령